「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본 승인안은 2026년 10월 2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26년 10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임.

Ⅰ. 제안이유

2025회계연도 결산을「지방자치법」제150조,「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Ⅱ. 주요내용

1. 세입·세출결산 총괄

□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1]은 **960,38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7,300백만원(0.76%) 증가**

○ **(일반회계) 847,33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2,137백만원(3.94%) 증가**

○ **(특별회계) 113,04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4,837백만원(△18.01%) 감소**

< 2024 ~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 현액	세입(A)	세출(B)	잉여금(A-B)				
				소계	이월금	보조금 반납금	지정 재원 잉여금	순세계 잉여금
2025년	**960,381**	**980,912**	**768,795**	**212,117**	**154,969**	**7,273**	**328**	**49,547**
일 반 회 계	847,335	865,274	691,151	174,123	120,397	7,218	328	46,180
특 별 회 계	113,046	115,638	77,644	37,994	34,572	55	-	3,367
2024년	**953,081**	**993,843**	**712,555**	**281,288**	**208,030**	**3,770**	**-**	**69,488**
일 반 회 계	815,198	854,282	622,711	231,571	160,956	3,647	-	66,968
특 별 회 계	137,883	139,561	89,844	49,717	47,074	123	-	2,520

1) 예산현액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2. 세입결산

□ **2025회계연도 세입 결산 규모**는 **980,912백만원**(일반회계 865,274백만원, 특별회계 115,638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2,931백만원(△1.30%) 감소**

3. 세출결산

□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 규모**는 **768,795백만원**(일반회계 691,151백만원, 특별회계 77,644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56,240백만원(7.89%) 증가**

4. 결산상 잉여금[2)]

□ **2025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212,117백만원**(일반회계 174,123백만원, 특별회계 37,99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69,171백만원(△24.59%) 감소**

2) 결산상 잉여금= 세입(수납액) - 세출(지출액)

Ⅲ. 세입·세출결산

1. 총 괄

□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예산현액의 총규모**는 **960,381**백만원으로,

○ 세입결산액 980,912백만원, 세출결산액 768,795백만원임

□ **결산상 잉여금**은 **212,117백만원**으로

○ 내역별로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 154,969백만원, 보조금반납금이 7,273백만원, 지정재원 잉여금[3]이 328백만원, 순세계잉여금 49,547백만원임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세입(A)	세출(B)	잉여금(A-B)				
				소계	다음연도이월액	보조금반납금	지정재원잉여금	순세계잉여금
합 계	**960,381**	**980,912**	**768,795**	**212,117**	**154,969**	**7,273**	**328**	**49,547**
일반회계	847,335	865,274	691,151	174,123	120,397	7,218	328	46,180
특별회계	113,046	115,638	77,644	37,994	34,572	55	-	3,367
상수도공기업	34,680	36,558	24,402	12,156	9,932	-	-	2,224
기타 특별회계	78,366	79,080	53,242	25,838	24,640	55	-	1,143
의료급여기금	377	378	357	21	-	18	-	3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300	302	296	6	5	-	-	1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1,633	1,635	1,125	510	300	-	-	210
수질개선	76,056	76,765	51,464	25,301	24,335	37	-	929

3) 지정재원 잉여금(711-02): 지난연도에 교부된 지정재원(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중 반납하거나 이월하지 않고 예산에 다시 편성해야 하는 금액

2. 일반회계

가. 세입결산

□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규모(수납액)는 **865,274백만원**으로, 전년대비(2024회계연도 세입결산 규모 854,282백만원) **10,992백만원(1.29%) 증가**

□ **세목별 세입결산 구성비**는

○ **(지방세수입) 43,430백만원**으로, 세입 결산액의 **5.01% 비중**

○ **(세외수입) 37,595백만원**으로, 세입 결산액의 **4.34% 비중**

○ **(지방교부세 등) 334,627백만원**으로, 세입 결산액의 **38.67% 비중**

○ **(조정교부금등) 17,002백만원**으로, 세입 결산액의 **1.96% 비중**

○ **(보조금) 190,932백만원**으로, 세입 결산액의 **22.06% 비중**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41,688백만원**으로, 세입 결산액의 **27.93% 비중**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세 목 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합 계	**847,335**	**873,982**	**865,274**	**1,037**	**7,671**
지방세수입	44,149	49,636	43,430	761	5,445
세외수입	33,888	40,047	37,595	276	2,176
지방교부세 등	324,672	334,627	334,627	-	-
조정교부금등	14,381	17,002	17,002	-	-
보조금	191,949	190,932	190,932	-	-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238,296	241,738	241,688	-	50

□ **예산현액 대비 세입결산액**은 **총 17,939백만원(102.12%) 초과 수납**

○ **(지방세수입)** 예산현액 대비 **△719백만원(98.37%) 미달 수납**

○ **(세외수입)** 예산현액 대비 **3,707백만원(110.93%) 초과 수납**

○ **(지방교부세 등)** 예산현액 대비 **9,955백만원(103.07%) 초과 수납**

○ **(조정교부금등)** 예산현액 대비 **2,621백만원(118.22%) 초과 수납**

○ **(보조금)** 예산현액 대비 **△1,017백만원(99.47%) 미달 수납**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예산현액 대비 **3,392백만원(101.42%) 초과 수납**

□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결산액**은 **총 △8,708백만원(99.00%) 미달 수납**

○ **(지방세수입)** 징수결정액 대비 **△6,206백만원(87.50%) 미달 수납**

○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대비 **△2,452백만원(93.88%) 미달 수납**

○ **(지방교부세 등)** 징수결정액 대비 **완전(100%) 수납**

○ **(조정교부금등)** 징수결정액 대비 **완전(100%) 수납**

○ **(보조금)** 징수결정액 대비 **완전(100%) 수납**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징수결정액 대비 **△50백만원(99.98%) 미달 수납**

□ **정리보류액 현황**은 **총 1,037백만원**으로, **세목별 구성비**는 다음과 같음

○ **(지방세수입)** 761백만원**(73.38%)**

○ **(세외수입)** 276백만원**(26.61%)**

□ **미수납액 현황**은 **총 7,671백만원**으로, **세목별 구성비**는 다음과 같음

○ **(지방세 수입)** 5,445백만원**(70.98%)**

○ **(세외수입)** 2,176백만원**(28.36%)**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0백만원**(0.65%)**

나. 세출결산

□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규모(지출액)는 **691,151백만원**으로, 전년대비(2024회계연도 세출결산 규모 622,711백만원) **68,440백만원(10.99%) 증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지출액	2025회계연도						전년 대비 지출액	
		예산 현액	지출액	구성비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 잔액	증감액	비율
합 계	**622,711**	**847,335**	**691,151**	**99.9**	**120,397**	**6,880**	**28,906**	**68,440**	**111.0**
일반공공 행정	35,710	55,304	51,450	7.4	1,401	97	2,356	15,740	144.1
공공질서 및안전	29,926	49,574	34,645	5.0	14,228	5	696	4,719	115.8
교육	8,123	13,407	11,365	1.6	1,944	-	98	3,242	139.9
문화및 관광	67,754	99,435	72,926	10.6	21,384	1,812	3,312	5,172	107.6
환경	60,348	47,974	43,690	6.3	2,440	541	1,303	△16,658	72.4
사회복지	114,192	152,860	131,384	19.0	17,836	1,658	1,982	17,192	115.1
보건	12,518	15,018	13,978	2.0	-	260	779	1,460	111.7
농림해양 수산	118,348	162,628	131,219	19.0	26,232	1,418	3,759	12,871	110.9
산업·중소 기업 및 에너지	17,380	24,563	23,820	3.5	192	13	538	6,440	137.1
교통및물류	33,790	48,590	37,553	5.4	10,805	1	232	3,763	111.1
국토및 지역개발	53,026	90,663	63,532	9.2	23,935	1,013	2,183	10,506	119.8
예비비	-	7,451	-	0.0	-		7,451	-	-
기타	71,596	79,868	75,589	10.9	-	62	4,217	3,993	105.6

□ 세출결산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131,384백만원이 지출되어, 세출결산액의 19.0%를 차지하였으며, 이어서 **농림해양수산 분야**(19.0%), **문화및관광 분야**(10.6%)순으로 나타남.

○ **교육 분야**는 **11,365백만원(1.6%)**으로 **제일 낮은 구성비**를 차지함

□ 세출결산액 중 전년대비 증가율이 가장 큰 분야는 **일반공공행정 분야**(15,740백만원, 144.1%) 이며, **교육 분야**(3,242백만원, 139.9%)와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6,440백만원, 137.1%) 순으로 증가됨

○ **환경 분야**는 **전년대비 지출액**이 **△16,658백만원(△27.6%) 감소함**

□ 다음연도 이월액은 **120,397백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4.20% 수준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26,232백만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23,935백만원), **문화및관광 분야**(21,384백만원) 순임

□ 보조금 반납금은 **6,880백만원**으로 예산현액의 0.81% 수준이며, **문화및관광 분야**(1,812백만원), **사회복지 분야**(1,658백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1,418백만원) 순임

□ 집행잔액은 **28,906백만원**으로 예산현액의 3.41% 수준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3,759백만원), **문화및관광 분야**(3,312백만원), **일반공공행정 분야**(2,356백만원) 순임

3. 특별회계

가. 세입결산

□ 2025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결산** 규모(수납액)는 **115,638백만원**으로, 전년대비(2024회계연도 세입결산 규모 139,561백만원) **△23,923백만원(△17.14%) 감소**

□ 특별회계 **세입결산액 비중**은

○ **(공기업특별회계) 36,558백만원**으로, 세입 결산액의 **31.61% 비중**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78백만원**으로, 세입 결산액의 **0.32% 비중**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302백만원**으로, 세입 결산액의 **0.26% 비중**

○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1,635백만원**으로, 세입 결산액의 **1.41% 비중**

○ **(수질개선특별회계) 76,765**백만원으로, 세입 결산액의 **66.38% 비중**

<2025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합 계	**113,046**	**117,025**	**115,638**	**-**	**1,387**
공기업 특별회계	34,680	37,694	36,558	-	1,136
기타특별회계	78,366	79,331	79,080	-	251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77	384	378	-	6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300	302	302	-	-
농공단지조성 및관리사업 특별회계	1,633	1,635	1,635	-	-
수질개선 특별회계	76,056	77,010	76,765	-	245

□ 예산현액 대비 세입결산액은 총 2,592백만원(102.29%) 초과 수납

○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현액 대비 1,878백만원(105.41%) 초과 수납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현액 대비 1백만원(100.26%) 초과 수납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 대비 2백만원(100.66%) 초과 수납

○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 대비 2백만원(100.12%) 초과 수납

○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현액 대비 709백만원(100.93%) 초과 수납

□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결산액은 총 △1,387백만원(98.82%) 미달 수납

○ (공기업특별회계) 징수결정액 대비 △1,136백만원(96.99%) 미달 수납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징수결정액 대비 △6백만원(98.44%) 미달 수납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징수결정액 대비 완전(100%) 수납

○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징수결정액 대비 완전(100%) 수납

○ (수질개선특별회계) 징수결정액 대비 △245백만원(99.69%) 미달 수납

□ 미수납액 현황은 총 1,387백만원으로, 회계별 구성비는 다음과 같음

○ (공기업특별회계) 1,136백만원(81.90%)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백만원(0.43%)

○ (수질개선특별회계) 245백만원(17.66%)

나. 세출결산

□ 2025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결산** 규모(지출액)는 **77,644백만원**으로, 전년대비(2024회계연도 세출결산 규모 89,844백만원) **△12,200백만원(△13.58%) 감소**

<2025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보 조 금 반 납 금	집행잔액
합 계	**113,046**	**77,644**	**34,572**	**55**	**775**
공기업 특별회계	34,680	24,402	9,932	-	346
기타특별회계	78,366	53,242	24,640	55	429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77	357	-	18	1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300	296	5	-	-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1,633	1,125	300	-	208
수질개선 특별회계	76,056	51,464	24,335	37	220

□ 다음연도 이월액은 **34,572백만원**으로 예산현액의 30.58% 수준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전체 이월액의 70.38%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계속비 사업의 이월(21,147백만원)로 인한 것임

□ 보조금 반납금은 **55백만원**으로 예산현액의 0.05% 수준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전체 보조금 반납금의 67.27%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점오염저감사업 유지관리 30백만원’ 등에서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였음.

□ 집행잔액은 **775백만원**으로 예산현액의 0.69% 수준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전체 집행잔액의 28.38%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창강 물환경 체험센터 조성사업 73백만원’, ‘분뇨처리시설 감시원 보상금 지원 8백만원’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4. 예산이용・전용・이체

□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는 예산 집행 과정에서 **당초에 편성된 예산 목적이나 편성 내역을 변경**하는 제도로, **예산의 이용**은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책사업 간 예산을 상호 사용**할 수 있으며, **예산의 전용**은 같은 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에서 단위사업 또는 목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임. **예산의 이체**는 같은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해 기관 내 직무권한이 변동되었을 때 예산을 상호 이체**할 수 있는 것으로,

□ 2025회계연도에 예산을 이용·전용·이체 사용한 내역을 보면, 예산이용과 예산이체는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 5건**에 **129백만원**임

<2025회계연도 예산전용 현황>

(단위 : 천원)

과목			전용 금액	승인일자	사유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총 5건			**129,000**		
기획예산과	주민과 함께하는 정책기획	201-01 (사무관리비)	1,500	2025-06-23	합동평가 초과달성에 따른 인센티브 추가 지급
	주민과 함께하는 정책기획	303-01 (포상금)			
올림픽체육과	국제행사 참가	201-01 (사무관리비)	80,000	2025-06-18	세계올림픽도시연맹 총회 개최 및 사전준비
	국제행사 참가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경제과	전통시장 활성화	201-01 (사무관리비)	3,500	2025-01-31	진부전통시장 주차타워 근로자 인건비 지급
	진부주차타워 운영	101-04 (기간제보수)			
안전교통과	여객터미널 환경개선 사업(도비)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0	2025-03-25	사업주체 변경(보조사업자 → 군 직접)
	여객터미널 환경개선 사업(도비)	401-01 (시설비)			
농업기술센터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지원(보조)	301-14 (기타보상금)	24,000	2025-06-18	가뭄극복을 위한 양수기 등 사용으로 급유탱크 필요성 증가
	소형농기계공급지원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 2025년도 추경예산 의결일 : 1회(5.13), 2회(9.12), 3회(12.18)

□ 이 중 **지방보조금 관련 통계목**[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민간자본사업보조(402-01)] **변경 사례가 3건**으로, 지방보조금은 주민·민간단체 등 보조사업자 또는 수혜자와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예산인 만큼, 예산 수립 시에는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통계목 변경 시에는 보조사업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전용하여야 함

5. 예비비 지출

□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일반예비비 664백만원**으로, ‘대관령면 청사 화재현장 복구비로 49백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군비부담금 615백만원’을 지출결정하고, 지출잔액 12백만원이 발생함

〈2025회계연도 일반 예비비 집행현황〉

(단위 : 원)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지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지출 잔액	예비비 지출사유
합계			**663,536,000**	**651,869,878**	**0**	**11,666,122**	
회계과	읍면청사 유지보수	시설비	49,000,000	47,043,750	-	1,956,250	대관령면 청사 화재현장 복구
경제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보조)	기간제근로 자등보수	1,885,000	1,885,000	-	-	신속하고 원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군비 부담금
경제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보조)	기간제근로 자등보수	32,400,000	23,972,638	-	8,427,362	
경제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보조)	사무 관리비	5,206,000	4,208,490	-	997,510	
경제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보조)	사무 관리비	285,000	-	-	285,000	
경제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보조)	사회보장적 수혜금	417,195,000	417,195,000	-	-	
경제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보조)	사회보장적 수혜금	157,565,000	157,565,000	-	-	

Ⅳ. 기금결산

□ 2025회계연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8종**이며, **당해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30,547백만원**으로 전년도말 25,510백만원보다 5,037백만원(19.75%) 증가하였으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4,436백만원, 사용액은 9,399백만원임

□ 기금별 주요증감을 살펴보면, 평창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2,345백만원, 평창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2,075백만원 증가, 평창군체육진흥기금은 △324백만원, 평창군식품진흥기금은 △3백만원 감소함

〈2025회계연도 기금조성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 ㉮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계 ㉯=㉰-㉱	조성액 ㉰	사용액 ㉱			
계	**25,510**	**5,037**	**14,436**	**9,399**	**30,547**	**39,946**	**39,946**
평창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79	2	2	-	81	81	81
평창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11,531	2,345	10,345	8,000	13,876	21,877	21,877
평창군자활기금	515	16	16	-	531	531	531
평창군고향사랑기금	889	371	426	55	1,260	1,316	1,316
평창군체육진흥기금	2,234	△324	568	892	1,910	2,802	2,802
평창군옥외광고발전기금	218	32	32	-	250	249	249
평창군재난관리기금	1,216	523	532	9	1,739	1,748	1,748
평창군식품진흥기금	116	△3	24	27	113	139	139
평창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8,712	2,075	2,491	416	10,787	11,203	11,203

□ 기금 운용 수입·지출은 **각각 39,946백만원**임

○ 수입에서는 ‘예치금 회수 25,510백만원(63.86%)’, ‘전입금 13,000백만원(32.54%)’가 대부분을 차지

○ 지출에서는 ‘예치금 30,547백만원(76.47%)’, 기타지출 8,002백만원(20.03%)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지출 내용 중에 평창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 금액이 8,000백만원임

○ 비융자성사업비는 1,398백만원으로 전체 지출의 3.50%를 차지하며, 기금별 설치 목적과 재원 보유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목적사업의 추진실적과 활용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Ⅴ. 재무제표

1. 재무제표

□ 2025회계연도 순자산은 **3,929,95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9,789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82,91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87,370백만원** 증가

<2025회계연도 재정상태 및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4년		전년 대비 증감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금 액	구성비
자산	**3,978,961**	**100**	**3,961,458**	**100**	**17,503**	**100**
유동자산	258,903	6.51	317,783	8.02	△58,880	△336.4
투자자산	2,375	0.06	2,298	0.06	77	0.44
일반유형자산	287,407	7.22	285,271	7.20	2,136	12.2
주민편의시설	599,867	15.08	559,706	14.13	40,161	229.45
사회기반시설	2,826,878	71.05	2,793,574	70.52	33,304	190.28
기타비유동자산	3,531	0.08	2,826	0.09	705	4.03
부채	**49,010**	**100**	**41,296**	**100**	**7,714**	**100**
유동부채	18,627	38.01	9,140	22.13	9,487	122.98
장기차입부채	17,262	35.22	19,514	47.26	△2,252	△29.19
기타비유동부채	13,121	26.77	12,642	30.61	479	6.21
순자산	**3,929,951**	**100**	**3,920,162**	**100**	**9,789**	**100**
고정순자산	3,693,830	93.99	3,614,728	92.21	79,102	808.07
특정순자산	30,861	0.79	25,962	0.66	4,899	50.05
일반순자산	205,260	5.22	279,472	7.13	△74,212	△758.12

□ **총자산은 3,978,96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703백만원** 증가

○ 주민편의시설은 40,161백만원, 사회기반시설은 33,304백만원 증가한 반면, 유동자산은 △58,880백만원 감소

□ **총부채는 49,010백만원**으로 **전년대비 7,714백만원** 증가

○ 유동부채는 9,487백만원 증가, 장기차입부채는 △2,252백만원 감소

□ **순자산**은 9,789백만원 증가하였으나, 그중 일반 순자산은 △74,212백만원 감소

<2025회계연도 재정운영 및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4년		전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증감률(%)
비용총계	**603,929**	**100**	**527,550**	**100**	**76,379**	**14.48**
인건비	91,857	15.21	88,279	16.73	3,578	4.05
운영비	197,171	32.65	188,776	35.78	8,395	4.45
정부간이전비용	7,726	1.28	7,648	1.45	78	1.02
민간등이전비용	204,347	33.83	173,538	32.9	30,809	17.75
기타비용	102,828	17.03	69,309	13.14	33,519	48.36
수익총계	**686,845**	**100**	**697,836**	**100**	**△10,991**	**△1.58**
자체조달수익	90,386	13.16	78,847	11.3	11,539	14.63
정부간이전수익	562,025	81.83	616,397	88.33	△54,372	△8.82
기타수익	34,434	5.01	2,592	0.37	31,842	1,228.47
재정운영결과 (비용-수익)		(82,916)		(170,286)		87,370

□ 비용은 603,92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76,379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민간등이전비용 30,809백만원과 기타비용 33,519백만원이 증가

□ 수익은 686,84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0,991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자체조달수익은 증가하였으나 정부간이전수익은 △54,372백만원 감소

□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82,91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87,370백만원 증가

○ 재정운영결과의 증가는 일반수익이 재정운영순원가를 초과한 규모가 전년보다 감소하였음을 의미하며, 2025회계연도에는 재정운영순원가가 전년도보다 74,989백만원 증가

2. 채권결산

□ 「지방재정법」 제2조제4호[4]에 따르면, 채권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말함

□ 2025회계연도말 일반회계 **채권현재액**은 **2,405백만원**으로, **전년도말 2,552백만원** 대비 **147백만원(△5.76%) 감소**

<2025회계연도 채권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발 생 액	당해연도 소 멸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합 계	**2,551,863**	**832,370**	**979,318**	**2,404,915**
일반회계	2,551,863	832,370	979,318	2,404,915
특별회계	-	-	-	-
기 금	-	-	-	-

□ 주요 채권 현황으로는 보증금채권에 ‘회원권 737백만원’, ‘융자금채권에 ‘공무원 학자금대여 1,254백만원’, ‘주택개량 286백만원’, 기타채권에 행정소송 승소금 30백만원 등이 있음.

---

4) 「지방재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채권”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말한다.

3. 채무결산

□ 「지방재정법」 제2조제5호[5]에 따르면, 채무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말함.

○ **(채무 유형)** 지방채증권,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및 보증채무부담행위 등 관련 법령 및 결산 지침에 따른 채무 항목

□ 2025회계연도말 **채무현재액**은 **19,514백만원**으로, **전년도말 21,117백만원** 대비 **1,602백만원(△7.58%) 감소**

<2025회계연도 채무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계	발생액	소멸액	
합 계	**21,116,800**	**△1,602,400**	**-**	**1,602,400**	**19,514,400**
일반회계	20,516,800	△1,502,400	-	1,502,400	19,014,400
기타회계 (수질개선)	600,000	△100,000	-	100,000	500,000

□ **일반회계 채무 19,014백만원, 기타특별회계(수질개선특별회계) 채무 500백만원**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 접근망 확충 등 6개 사업의 지방채무 상환

5) 「지방재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채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말한다.

Ⅵ. 성과보고서

□ **「지방재정법[6]」** 제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7]」**은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정하고 있음.

○ 또한 **「지방회계법」**은 성과보고서를 결산서의 구성 서류에 포함시키도록 정하고 있고[8], 성과보고서는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 목표와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사업원가와 성과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9].

< 성과목표관리의 기본구조 >

성과계획 수립 (y-1년)	재정운용 (y년)	성과측정·보고 (y+1년)
■ 성과계획서 작성 (성과목표 및 측정방법 설정)	■ 성과계획에 따른 예산배분·집행	■ 성과보고서 작성 ■ 결과 보고 ■ 환류

※ 행정안전부 훈령 제372호(2025.1.1.시행)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 p.59, p.75

---

6)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7)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성과중심의 재정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과 목표
2. 성과 목표의 관리 체계
3. 성과 평가와 그 지표
4. 성과 평가결과의 반영
5. 그 밖에 성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지방회계법」 제15조(결산서의 구성)** 결산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중략)
4. 성과보고서

9) **「지방회계법」 제16조(결산서의 작성 등)** ④ 제15조제4호에 따른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목표와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사업원가와 성과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평창군은 **202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며 23개 전략목표수, 77개 정책사업 목표수, 158개 지표수**에 대해 성과계획서를 수립하여 제출한 바 있으며, 2025회계연도 결산서에는 23개 전략목표수, 79개 정책사업 목표수, 158개 지표수에 대한 성과달성도를 제출함

○ 허가과와 건설과는 기존 정책사업목표를 추가하여 제출함

□ 성과보고서에 따라 평가한 결과, **성과 초과달성 27건, 달성 96건, 미달성 35건으로 달성도는 77.85% 수준**으로 전년도에 비해 달성도가 2.76%p 증가

□ 앞으로도, 성과지표 발굴에 내실을 기하고 성과지표 측정방법 개선 및 실질적인 성과분석을 통해 예산투자에 따른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

〈2025회계연도 성과목표(성과달성도) 현황〉

(단위: 원, 개)

부 서 명		성 과 목 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개수	지표수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합 계		23	79	158	27	96	35	**744,392,630,951**
행정담당관		1	4	7	0	3	4	78,707,876,678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1	3	8	0	7	1	18,406,596,965
	인재육성과	1	5	5	0	5	0	12,502,540,824
	복지정책과	1	6	9	2	4	3	23,604,175,887
	가족복지과	1	5	9	1	7	1	83,602,600,994
	세정과	1	2	3	1	2	0	899,071,052
	회계과	1	1	5	0	4	1	6,382,187,656
관광경제국	관광정책과	1	2	3	2	1	0	18,022,277,627
	문화예술과	1	3	7	1	3	3	23,524,147,672
	올림픽체육과	1	4	10	2	5	3	32,649,594,828
	경제과	1	6	8	2	3	3	38,900,943,159
	민원토지과	1	2	7	0	7	0	4,764,069,770

도시안전국	도시과	1	3	7	1	5	1	33,443,554,446
	허가과	1	2	4	0	3	1	14,613,785,770
	건설과	1	6	12	3	7	2	70,959,734,685
	안전교통과	1	3	8	2	4	2	34,658,024,922
	산림과	1	2	6	1	5	0	33,520,983,345
	환경과	1	4	6	1	5	0	81,910,157,330
	현안사업추진과	1	1	1	0	0	1	7,067,029,850
의회사무과		1	1	2	1	1	0	1,239,233,289
보건의료원		1	5	5	3	2	0	15,646,386,523
농업기술센터		1	7	19	4	8	7	86,583,848,224
상하수도사업소		1	2	7	0	5	2	17,139,623,169
읍면		0	0	0	0	0	0	5,644,186,286

Ⅶ. 종합검토의견

【주민 이해도 제고를 위한 결산정보 제공 내실화】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결산서는 결산 개요,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로 구성되며, 결산 개요는 그 내용을 요약하여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우리군은 결산서 도입부에 ‘주민이 알기 쉬운 2025회계연도 결산정보’(결산서 9쪽)를 수록하고, 주요 내용을 도표와 이미지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주민의 재정정보 이해를 돕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일부 자료는 수치와 도표 중심으로 제시되어 재정지표의 변동 원인과 분야별 지출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년 대비 증감 규모나 비율이 큰 항목에 대해서는 주요 변동 원인과 관련 사업, 재정적 배경을 함께 설명한다면 정보의 전달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인근 지방자치단체 및 인구·재정규모 등 재정여건이 유사한 지방자치단체와의 비교자료 및 최근 수년간의 주요 지표 추이를 함께 제공하는 것도 우리군의 재정여건과 운영 특징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10]의 사례를 참고하여 향후에는 단순한 수치의 시각화를 넘어 주요 재정변동의 원인과 의미, 사업성과 및 개선과제를 균형 있게 전달하는 방향으로 결산정보 제공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10) 참고: 충북 음성군, ‘숨김없이 투명하게! 막힘없이 한눈에! 주민이 알기쉬운 결산서’
(제7회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 우수상 수상)

【세입금 미수납액의 사유별 분석 및 징수관리 검토】(첨부서류 23쪽)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금 미수납액은 7,922백만원으로, 전년도 6,085백만원 대비 1,837백만원(30.19%)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납기미도래액에는 지적재조사 조정금 445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미수납액 증가를 평가할 때에는 이러한 개별 사업에 따른 부과 및 납부 시기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3년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 및 발생 사유〉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계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폐업부도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유예	국외이주	자금압박	기타	납기미도래
2025	7,922	367	70	5,542	63	95	11	-	5	1,769
2024	6,085	162	43	4,924	212	-	18	-	97	629
2023	5,594	29	9	3,739	305	-	23	100	145	1,244

미수납 사유별로는 납세태만이 5,542백만원으로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618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체납기간과 납부능력, 기존 징수조치 및 수납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장기·반복 체납과 일시적인 납부 지연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무재산·행방불명 등 그 밖의 사유에 대해서는 재산 및 소재 확인과 채무자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징수 가능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발생 사유와 징수 가능성에 따른 관리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안정적인 세입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금 환급 발생 최소화를 위한 관리방안 검토】(첨부서류 31~38쪽)

2025회계연도 세입금 환급액은 6,489백만원으로, 전년도 4,633백만원 대비 1,856백만원(40.06%)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행정기관 착오로 분류된 금액은 4,444백만원으로 전체의 약 6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세입금 환급 현황 및 사유〉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환급액	행정기관 착오	납세자 권리구제	납세자 착오	차량, 미등기	국세 경정	법령 개정	법인 정산	내부 거래	기타
2025	6,489	4,444	64	10	62	206	-	192	1,502	9
2024	4,633	1,409	272	548	62	207	1	433	1,668	33
2023	5,831	71	49	32	62	145	-	487	4,985	-

특히 특별교부세 1,650백만원과 특별조정교부금 2,500백만원의 환급액은 올해 행정기관 착오로 분류되어 있으나, 2023·2024회계연도에는 해당 세입과목의 환급액이 내부거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해당 환급의 처리 사유와 실제 자금 반환 여부, 세입과목·회계연도 정정 여부 등을 살펴보고, 예년과 달리 분류된 근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두 항목을 제외한 행정기관 착오 환급액은 약 294백만원이며, 주요 항목은 공유재산임대료 156백만원, 재산세 26백만원 및 보건의료수수료 20백만원입니다. 업무상 착오에 따른 환급은 추가적인 행정처리와 납부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해당 항목의 발생 원인을 점검하고 관련 법령 검토와 부과·수납 단계의 확인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입금 환급은 과오납 정정이나 정산, 교부결정 변경 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급액 증가만으로 업무상 오류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환급 사유 분류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반복되는 착오 유형을 분석하여 예방 가능한 오류를 줄이는 것이 불필요한 환급 발생을 최소화하고 세입관리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본지출 집행률 제고를 위한 사업관리 검토】(첨부서류 41~43쪽)

2025회계연도 전체 세출예산 집행률은 80.05%이며, 예산현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191,586백만원입니다. 성질별로는 자본지출의 예산현액이 511,496백만원으로 전체의 53.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354,026백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69.21%로 나타났습니다.

< 2025회계연도 성질별 세출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

성 질 별	예산현액	결산액	차 액	집행률	예산현액 구성비
합 계	**960,381**	**768,795**	**191,586**	**80.05**	**100**
인건비	76,100	71,124	4,976	93.46	7.92
물건비	43,833	35,097	8,736	80.07	4.56
경상이전	270,113	257,407	12,706	95.30	28.13
자본지출	511,496	354,026	157,470	69.21	53.26
보전재원	2,415	2,415	-	100	0.25
내부거래	39,987	39,987	-	100	4.16
예비비및기타	16,437	8,739	7,698	53.17	1.71

자본지출의 집행률은 전체 집행률보다 10.84%p 낮으며, 미집행액 157,470백만원은 전체 미집행액의 약 82.2%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 재정 집행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 단계에서 연내 집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사전 행정절차와 사업 추진 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원인을 분석하고, 사업 일정과 재원 확보 조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 조정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금 지출계획의 적정성 검토 및 활용방안 마련】(결산서 329쪽)

2025회계연도 기금 지출결산 총액은 39,946백만원이며, 예치금은 30,547백만원(76.47%), 기타지출은 8,002백만원(20.03%), 비융자성사업비는 1,398백만원(3.50%)입니다. 예치금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연도말 보유재원이라는 성격과 기금별 재원 관리 및 위기 대응 기능을 함께 고려하여 운용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2025회계연도 기금운용 지출 세부명세서 > (결산서 333쪽)

(단위: 백만원)

기금별	계	비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지출
합 계	**39,946**	**1,382**	**30,547**	**8,002**
평창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81	-	81	
평창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21,877	-	13,877	8,000
평창군자활기금	531	-	531	-
평창군고향사랑기금	1,316	55	1,260	-
평창군체육진흥기금	2,802	892	1,910	-
평창군옥외광고발전기금	249	-	249	-
평창군재난관리기금	1,748	10	1,739	-
평창군식품진흥기금	139	9	113	2
평창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11,203	416	10,787	-

< 2025회계연도 비융자성 사업 집행률 20% 미만 사업 내역 >

(단위: 백만원,%)

기금별	세부사업명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집행률
평창군자활기금	자활사업 지원(융자사업)	28	0	0
평창군재난관리기금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650	10	1.5
평창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평창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기타보상금)	2,239	416	18.6

비융자성 사업 중 집행률이 20% 미만인 사업은 자활사업 지원,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사업으로 3건입니다. 특히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는 계획현액 650백만원 중 450백만원이 응급복구 대비재원이며, 예방사업 및 시스템 구축·장비 구입 등에 편성한 200백만원의 집행액은 9.5백만원으로 집행률이 4.75%입니다.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은 계획현액 2,239백만원 대비 416백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18.6%입니다.

재난 대응과 가격하락 보상을 위한 사전 편성은 신속한 지원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의미가 있으며, 미집행 재원은 향후 목적사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재난관리기금은 예방사업과 응급복구 대비재원을 구분해 사업 추진실적과 적정 재원 규모를 살펴보고,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은 지원대상, 가격변동 및 보상금 지급 실적 등을 반영하여 지출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군 전체 기금의 설치 목적과 재원 보유의 필요성, 사업수요 및 집행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목적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자금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부간이전수익 감소 및 주요 비용 증가 요인 검토】

2025회계연도 정부간이전수익은 562,025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54,372백만원 감소한 반면, 민간등이전비용은 30,809백만원, 기타비용은 33,519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두 비용 항목은 전체 비용 증가액의 84.2%를 차지하여 비용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5회계연도 재정운영 및 증감현황> (결산검사 의견서 19쪽)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4년		전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증감률(%)
비용총계	**603,929**	**100**	**527,550**	**100**	**76,379**	**14.48**
인건비	91,857	15.21	88,279	16.73	3,578	4.05
운영비	197,171	32.65	188,776	35.78	8,395	4.45
정부간이전비용	7,726	1.28	7,648	1.45	78	1.02
민간등이전비용	204,347	33.83	173,538	32.9	30,809	17.75
기타비용	102,828	17.03	69,309	13.14	33,519	48.36
수익총계	**686,845**	**100**	**697,836**	**100**	**△10,991**	**△1.58**
자체조달수익	90,386	13.16	78,847	11.3	11,539	14.63
정부간이전수익	562,025	81.83	616,397	88.33	△54,372	△8.82
기타수익	34,434	5.01	2,592	0.37	31,842	1,228.47
재정운영결과 (비용-수익)		(82,916)		(170,286)		87,370

자체조달수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총수익 감소와 총비용 증가에 따라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는 규모는 전년 170,286백만원에서 82,916백만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다만, 이는 발생주의 회계상 수익과 비용의 차액으로 현금 잔액이나 가용재원과는 구분되므로, 차액의 감소보다는 주요 항목의 증감 내용과 향후 재정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익과 비용의 주요 변동 항목을 살펴보자면, 정부간이전수익 감소는 국고보조금수익 36,572백만원과 시도비보조금수익 13,284백만원의 감소가 주요 요인이며, 두 항목은 전체 감소액의 약 9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수익은 사업 규모와 추진 일정, 정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감소 원인을 주요 사업의 종료·축소 등과 연계하여 분석하고 향후 재원 확보 및 사업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부간이전수익 재정운영표 >

(단위: 백만원, %)

과목	해당연도(2025년)	직전연도(2024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562,025**	**616,397**	△54,372	**△8.82**
지방교부세수익	327,427	329,879	△2,452	△0.74
시군 조정교부금수익	17,002	15,500	1,502	9.69
국고보조금수익	**151,892**	**188,464**	**△36,572**	**△19.41**
시도비보조금수익	**47,866**	**61,150**	**△13,284**	**△21.72**
시도비보조금반환금수익	51	0	51	-
자치단체간부담금수익	3,155	2,990	165	5.52
지적재조사조정금수익	649	349	300	85.96
지방교부세감소분보전수익	6,783	6,865	△82	△1.19
지방소멸대응기금수익	7,200	11,200	△4,000	△35.71

한편, 기타수익은 2024년 2,592백만원에서 2025년 34,434백만원으로 31,842백만원(1,228.47%) 증가하였습니다. 기타수익의 증가는 자체조달수익 증가와 함께 재무제표상 총수익 감소폭을 일부 완화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증가를 지속적인 재원 확충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주요 구성 내역과 현금 유입 여부, 향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인지를 구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정운영표의 항목별 금액만으로는 기타수익 증가를 초래한 주요 거래와 발생 사유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주요 구성 내역과 전년 대비 증가 사유, 관련 회계처리 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앞서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주민이 알기 쉬운 2025회계연도 결산정보' 재정운영(25쪽) 설명에도 도표로 제시되어 있으나, 수익 항목별 증감 현황을 보여주는 데 그치고 있어 주요 증가 사유를 간명하게 제시하면 주민이 수익 변동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주민이 알기 쉬운 2025회계연도 결산정보 '재정운영' > (결산서 2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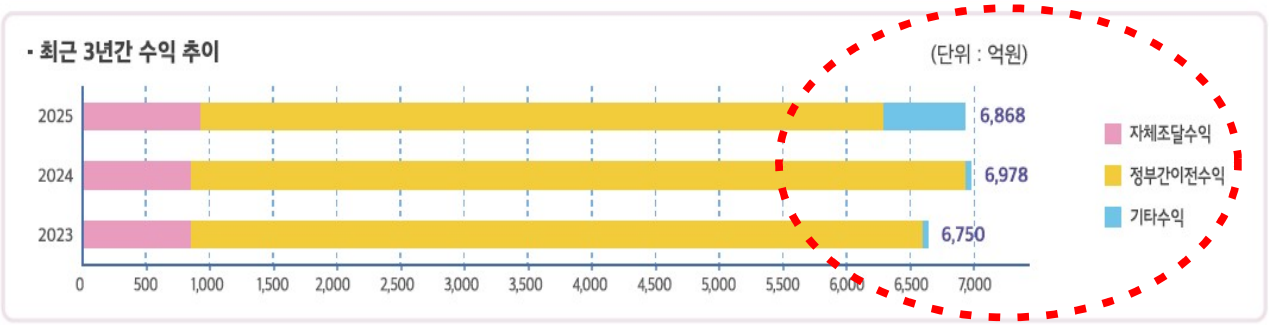

민간등이전비용은 민간보조금 18,392백만원, 출연금 5,348백만원, 기타이전비용 6,103백만원을 중심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출연금은 전년 대비 113.35%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사업의 필요성과 주민서비스 제공 성과, 향후 재정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민간등이전비용 재정운영표 >

(단위: 백만원, %)

과목	해당연도(2025년)	직전연도(2024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204,347**	**173,538**	30,809	**17.75**
민간보조금	**160,173**	**141,781**	**18,392**	**12.97**
민간장학금	47	44	3	6.82
이차보전금	356	199	157	78.89
출연금	**10,066**	**4,718**	**5,348**	**113.35**
전출금비용	4,899	4,108	791	19.25
지방공공기관보조금	2,255	2,240	15	0.67
기타이전비용	**26,551**	**20,448**	**6,103**	**29.85**

기타비용 증가액의 약 87.9%는 세부 과목인 ‘기타비용’에서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과목은 전년 대비 약 29,466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증가액의 대부분은 일반회계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반면, 주요 감가상각비 증가액은 약 4,540백만원이고 자산처분손실은 감소하였습니다. 재정운영표의 회계별 금액만으로는 세부 ‘기타비용’의 구체적 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주요 구성 내역과 전년 대비 증가 사유, 관련 회계처리 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기타비용 재정운영표 >

(단위: 백만원, %)

과목	해당연도(2025년)	직전연도(2024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02,828**	**69,309**	**33,519**	**48.36**
자산처분손실	5	243	△238	△97.94
자산손상차손	58	17	41	241.18
일반유형자산감가상각비	9,138	8,697	441	5.07
주민편의시설감가상각비	27,662	24,583	3,079	12.52
사회기반시설감가상각비	31,850	30,830	1,020	3.31
무형자산상각비	651	1,215	△564	△46.42
대손상각비	1,131	858	273	31.82
기타비용	**32,333**	**2,866**	**29,467**	**1,028.16**

종합적으로, 이전수익의 변동과 주요 비용의 증가 요인을 사업 내용과 회계처리 특성에 따라 분석하고, 이를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향후 재원 확보와 지출 수요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필요성과 성과, 향후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지출 우선순위와 지원 규모를 조정함으로써 주민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과 재정운용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 결과】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세입예산 추계오차 및 초과세입 최소화 방안 강구’ 등 총 12건의 개선·권고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조치 내용과 개선 실적은 향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산은 예산이 당초 계획과 목적에 맞게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사업의 성과가 충분히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재정계획과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반복되는 지적사항은 집행부의 구체적인 개선 조치와 지속적인 관리로 이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산 심사에서는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사업 성과,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개선·권고사항 목록〉

연번	제 목	비고 (의견서 쪽수)
1	세입예산 추계오차 및 초과세입 최소화 방안 강구	27쪽
2	세입예산 없는 징수결정 및 수납	28쪽
3	관행적 예산편성 및 추계 부실	30쪽
4	불용액 발생에 따른 개선	31쪽
5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따른 개선	32쪽
6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 상환	34쪽
7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검사	35쪽
8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철저	36쪽
9	보조금 정산 및 반납명세서 작성 철저	37쪽
10	일반회계 사회기반시설 “댐” 감가상각 권고	38쪽
11	적극적 성과지표 설정	39쪽
12	읍·면 예산집행 잔액 과다발생	41쪽

Ⅷ. 참고자료(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 · 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 · 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 · 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회계법

제15조(결산서의 구성) 결산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1. 결산 개요
2. 세입 · 세출 결산
3. 재무제표(주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재정상태표

나. 재정운영표

다. 순자산 변동표

4. 성과보고서

제16조(결산서의 작성 등) ① 제15조제1호에 따른 결산 개요는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용을 요약하고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의견서와 검사위원의 성명을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